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 2025. 3. 19.(수) 10:00 〕
〔 본 회 의 장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완 도 군 의 회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27. 조인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3. 10.

다. 상정일자 : 2025. 3.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 지원신청 등(안 제6조)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아동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완도군 관내 가정
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
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
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
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
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
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illegible]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사무의 명칭 :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적변동, 전출입 정보	

※ 인적변동 정보 : 사망, 말소, 거주불명, 성명/주민등록 변경 등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본인(보호자)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_____(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3. 10.

다. 상정일자 : 2025. 3.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자체로서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
-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의 활용을 통한 해양치유산업 홍보 및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해양치유의 날 제정일(안 제2조)
- 기념식 및 행사 개최(안 제3조)
- 재정 지원(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해양치유의 날을 7월 6일로 정하고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도해양치유의 날)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 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활용을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치유의 날을 지정한다.

② 완도해양치유의 날은 7월 6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3. 10.

다. 상정일자 : 2025. 3.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등 군민대상으로 지역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설치
- 가족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센터의 역할과 기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설치위치(안 제2조)
- 시설(안 제3조)
-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행사운영 및 지원(안 제6조)
- 위탁운영(안 제7조)
- 수탁자의 의무(안 제8조)
- 위탁의 취소(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해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제7조 3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 5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라 기간연장을 의미하며, 민간위탁의 기한연장은 새로운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조례안 수정안 1부. 끝.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03에 둔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교육실
4. 다목적 소통공간
5.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건강한 가정 공동체 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

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체결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족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 표]

완도군 가족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무일	
	학기중	방학중	공통	요일별
가족센터	09:00~18:00	09:00~18:00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동육아나눔터	09:00~18:00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다목적 소통공간	09:00~18:00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탁운영)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u>5년</u>으로 한다. <u>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제7조(위탁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5년이내</u>---. <단서 삭제>

【의안번호 제3378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3. 10.

다. 상정일자 : 2025. 3.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4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개시
*일반기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지정기부는 미리 공시된 해당 '사업'에 기부
-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 사업'으로 관내 신규 창단된 유소년야구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완도군 BC 유소년야구단 육성 지원(안)」을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에 의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반영' 등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24. 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지정기부 사업(안)

- 사 업 명 : 완도군BC 유소년야구단 육성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기여 등 신규 창단 유소년 야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모금기간 : 2025. 3. ~ 2025. 6. 31.(4개월)
- 목표금액 : 금40,00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 훈련용품 (트레이닝 용품 등)	5,800,000원 × 1식	5,800
▪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	2,500,000원 × 8회	20,000
▪ 선수단 유니폼(동·하계)	130,000원 × 30명 × 2회	7,800
▪ 지도자 수당(1명)	80,000원 × 8일 × 10개월	6,400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3379호】

**완도청소년문화의집 ·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3. 10.

다. 상정일자 : 2025. 3.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꿈틀과 체결한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다.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시 설 명
 1. 완도청소년문화의집
 2.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소 재 지 :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 ▶ 완도군청소년문화의집 내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2층)
- 시설규모 : 3층 건축연면적 1,144.5㎡(1층 404.9㎡, 2층 404.9㎡, 3층 334.7㎡)
- 시설내용 : 사무실, 공예실, 다목적실, 집단상담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시청각실, 동아리실, 미술실, 댄스연습실 등

- 위탁범위 :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운영(주요)사업

- 완도청소년문화의집 관리 · 운영

-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 운영 및 체험학습 기회 제공
- 그 밖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청소년 대상 각종 사업 등

-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 운영

-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그 밖에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청소년 대상 각종 사업 등

-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 · 운영

-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 멘토링 및 학습지원,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시행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 · 취업지원 서비스」운영으로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 및 심리·정서검사 시행
- 그 밖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청소년 대상 각종 사업 등

라. 민간위탁 방법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적격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마. 민간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완도청소년문화의집 : 2025. 4. 9. ~ 2030. 4. 8.(5년간)
 - ▶ 완도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25. 4. 9. ~ 2030. 4. 8.(5년간)
 - ▶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025. 4. 9. ~ 2028. 4. 8.(3년간)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바. 책임한계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사. 지도·감독

-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정기 또는 필요시 점검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3380호】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3. 10.

다. 상정일자 : 2025. 3.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어성을 즐기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맨발걷기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완도군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 위탁근거: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탁기간: 2025. 3. ~ 2025. 12.
- 선정방법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 체결

● 운영내용

- 지역사회 맨발걷기 저변 확산 및 맨발 걷기 붐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해양치유 활성화 추진
- 맨발 걷기 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맨발걷기 추진 전·후 언론 홍보 추진
-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가능한 사업추진

3.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인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광과
협의하여 진행해주길 권고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 제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3. 10.

다. 상정일자: 2025. 3. 10.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군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섬 테마별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종합계획 수립·시행 신설(안 제5조)
- 관광진흥사업 추가(안 제6조)
 - 기존 6개 사업 외 11개 사업 추가
-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신설(안 제7조)
- 지원 제외(안 제9조)
- 보조금 지원(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을 “관광의 진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며, 제9조(종전의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인센티브 지원 및 설명회, 팸투어, 특산물 판촉 체험행사 등 포함)
2.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관광사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판매소 운영
4. 관광 홍보마케팅 및 SNS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상품 및 관광홍보기념품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7. 관광 수용태세 확립 및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8.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9.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10.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1.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

12.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개보수사업
13. 한옥체험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1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1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1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7.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7조) 제목 “보조금 대상”을 “보조금 지원”으로 하며,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76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
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관광사업 보조금”을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으로 하고,
제5장의 제목 “관광안내소 설치”을 “관광사업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등”을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관광진흥 업무 위탁”을 “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1조 뒤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관광진흥 업무 위탁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장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u> <u><신 설></u>	<u>제3장 관광의 진흥</u> <u>제5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u>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② <u>군수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③ <u>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u> <u>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u> <u>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u> <u>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u> <u>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u> <u>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신 설>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
요한 사항

④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진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인센
티브 지원 및 설명회, 팸투어, 특
산품판촉 체험행사 등 포함)

2.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
가

3. 관광사진 및 관광기념품 공모
전, 판매소 운영

4. 관광 홍보마케팅 및 SNS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
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상품 및 관광홍보기념품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
업

7. 관광 수용태세 확립 및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8.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신 설>

9.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10.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1.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

12.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개보수사업

13. 한옥체험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1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와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1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1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7.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신 설>

제5조(지원 대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신 설>

제7조(보조금 대상) 군수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수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장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

제8조(지원 대상) ① 군수-----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제외)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10조(보조금 지원) --- 법 제76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 -----

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개보수사업
2.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3. 관광객유치 및 특산물 판촉을 위한 체험행사
4. 한옥체험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5.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

<삭 제>

제11조(보조금 결정) --- 제10조---

-----.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u>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u> <u><신 설></u> <u>제12조</u> ~ <u>제15조</u> (생 략) <u>제6장 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u> <u>기능 등</u> <u><신 설></u> <u>제16조</u> ~ <u>제19조</u> (생 략) <u>제7장 관광진흥 업무 위탁</u> <u><신 설></u> <u>제20조</u> · <u>제21조</u> (생 략)	<u><삭 제></u> <u>제6장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u> <u>제14조</u> ~ <u>제17조</u>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u><삭 제></u> <u>제7장 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u> <u>및 기능 등</u> <u>제18조</u> ~ <u>제21조</u> (현행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u><삭 제></u> <u>제8장 관광진흥 업무 위탁</u> <u>제22조</u> · <u>제23조</u>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	--

현행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교부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직인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illegible]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 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교부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 명칭:
-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사업내용:
-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직인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illegible]

【의안번호 : 제3382호】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3. 10.

다. 상정일자: 2025. 3. 10.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위원회 위원 구성 및 가로수 조성과 관련된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직위 현행화(안 제5조제4항제1호)
 - 환경산림과장 → 산림휴양과장
-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5조제4항제3호)
 -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로수 조성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신설(안 제9조제7항)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또한, 조례안 제9조제7항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납부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조례안 수정안 1부. 끝.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각각 2명 이상”을 “각각 2명 이상,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환경산림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그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 ----- ----- -----각각 2명 이상,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이 -----.
1. <u>환경산림과장</u>	1. <u>산림휴양과장</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⑥ (생략)	제9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u>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그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8명</u>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0명</u>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u>그 기간</u>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납부의</u> <u>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u> - ----- ----- -----.

【의안번호 : 제3383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2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3. 10.

다. 상정일자: 2025. 3. 10.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본 항(당목)은 항내 어항시설 및 배후 부지에 접안시설 및 선착장이 부족함에 따라, 항내측은 간조 시 해저면이 육상으로 드러나 접안 수심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으로 물양장 이용에 불편을 호소함
- 전방향 파랑에 대해 정온이 확보되지 못하여 국가어항으로 피항기능 불가하며 항내 퇴적 문제로 인한 어항 이용률 감소로 외각시설 신설 및 준설계획이 필요함
-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어촌의 핵심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 수산업 발전, 어촌소득증대, 어촌 정주환경개선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코자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목항 지구」 매립계획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705-29 당목항 일원
- 내 용 : 방파제 조성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 신청현황 : 6,730㎡
- 기대효과
 - 항내 부족한 접안시설 및 선착장을 확충하고, 전방향 파랑에 대한 정온수역 확보 및 어업기능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어항이용의 안전성을 제고
 - 당목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어선의 접·이안 및 안정성을 개선하고 수산기능시설 및 친수조경을 배치하여 이용자 및 관광객의 편의도모하여 어항기능의 향상 기대

3.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관계법규 1부. 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하고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을 협의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